

재송여자중학교 펜싱(플러레) 운동부 지도자 채용 공고

본교에서는 우수한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덕망 있고,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학교 운동부(펜싱부) 지도자를 모집합니다. 펜싱에 대한 깊은 철학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지도하실 분을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플러레) 운동부 지도자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재 송 여 자 중 학 교 장

1. 선발 분야 및 인원 : 펜싱부(플러레) 운동부지도자 1명

선발 분야	선발 인원
펜싱(플러레)	1명

2. 채용기간 : 계약일 ~ 2027. 2. 28.

3. 근무조건

- 가. 직 종: 학교운동부지도자(근무형태: 상시 근무자)
- 나. 근무시간: 매주 월~금 (주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다. 보 수: 계약에 따른 월급제

4. 지원자격

- 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체육지도자 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다. 국가대표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준 국가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 주니어대표 등)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지도한 선수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 바. 해당 종목의 시·도 대표선수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 사.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 만 60세 이하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기타 미 언급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2026)에 준함

5. 지원 제한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나.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다.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 (성)폭력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라. 금품·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타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자
- 마. 체육관련 단체(종목단체, 체육회 등)로 부터 자격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 한 자
- 바. 기타 학교체육위원회에서 경기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응시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 7. 27. (월) 9:00 ~ 2026. 8. 3. (월) 11:00까지

접수방법	접수처	유의사항	비고
전자우편	jaesonggms@naver.com	- 스캔(컬러) 후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파일명: 펜싱지도자_응시자 성명.pdf - 2026. 8. 3. (월) 11:00까지 제출한 서류만 유효	전자우편 등기우편 방문접수 중 택 1하여 제출 (중복제출 불가)
방문접수	재송여자중학교 행정실	- 2026. 8. 3. (월) 11:00까지 방문	
❖ 접수결과 확인 -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정상 접수 여부 및 접수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문의 : 재송여자중학교 생활안전부 김상연 010-2043-6364			

7. 제출서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증(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부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 확인) 1부 ㉠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1부 ㉠ 경력증명서(선수경력증명서, 지도경력실적증명서 등) 1부 ㉠ 기타 본인 경력 증명 가능한 서류 (선수지도경력, 지도입상기록, 본인선수경력, 본인경기실적 등) 각 1부 ㉠ 중등 정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1부
채용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 ㉠ 회원종목단체 (징계)확인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 마약검사서 1부

8. 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가. 1차(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026. 8. 3. (월) 14:00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나. 2차(면접) 전형일시 및 장소 : 2026. 8. 4. (화) 9:00 (본관 2층 생각나눔터)

다. 최종합격자 통보 : 2026. 8. 4. (월) 14:00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 ※ 전형 일정은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성)범죄 경력 조회, 채용 신체검사 확인, 징계 이력 확인 등 채용 상의 결격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함.
- ※ 임용 1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내부결재를 받은 뒤 임용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나.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유효기간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다. 최종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 검증,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처리 됨.

라. 공고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마. 최종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환 가능함. (합격자 제외)

2026. 7. 27.

재 송 여 자 중 학 교 장

재송여자중학교 학교운동부(펜싱부) 지도자 이력서

(※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사진 (증명사진)
	한 문				
	영 문				
본적 주소					
현 주소					
E-Mail			휴대폰		
현직	소속기관 및 부서				
	근무기간				
	직책(직위)				

□ 학력사항

학 력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	
	년	월	일	대학(교)	과 졸업
	년	월	일	대학원	전공(석사)
	년	월	일	대학원	전공(박사)

□ 지도자 경력사항

기 간		학교 · 실업 · 프로	직위	비 고
년	(월 ~ 년 개월) 월			
년	(월 ~ 년 개월) 월			
년	(월 ~ 년 개월) 월			
년	(월 ~ 년 개월) 월			

※ 기간의 개월 수와 직위를 명확히 기재(감독, 코치 등) 할 것.

□ 경기 지도 실적(지도자 재직 시)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자격사항

자격증 종류	취득 년월일	발행처

□ 수상내역(고교, 대학, 실업팀 선수 시절)

년 월 일	내 용	비 고

위와 같이 펜싱부(플러레) 지도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서류를 갖추어 지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일 일

지 원 자 : (인/서명)

재송여자중학교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도자로서의 자세, 지원하게 된 동기, 지도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송여자중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에 따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민감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개인사항	체육인인명정보, CI, DI, 생년월일, 성명(개명 전 성명 포함), 성별, 연락처, 채용기관	징계사실유무 조회 및 관련 확인서 발급	3년
이력사항	과거/현재 소속정보(소속기관 단체, 직위, 종목)		
징계사항	징계기관, 징계기간, 징계종류, 징계 당시 직위,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행정처분 이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징계 이력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기간	제공 항목
소속기관 단체	(산하단체 포함) 징계사실 조회	최대 3년 (각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름)	① 본인식별을 위한 정보 ② 이전/현재 소속정보 ③ 체육계 관련 징계정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자격증 행정처분 이력 조회		
채용기관 단체	확인서 신청 대상자의 징계 이력 확인		

※ 소속기관 단체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에 가맹·소속된 모든 기관과 단체 중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또는 소속중인 기관 단체를 뜻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 이용하는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관련(선택)

수집·이용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위반행위 이력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성비위) 포함	위반행위 조회 및 확인서 기재	3년

※ 위반행위 : 각 체육기관 단체가 징계를 심의하게 된 사유 (예시 : 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배임·횡령, 복무규정 위반 등)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내 위반행위 기재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 관련(선택)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기간	제공 항목
채용기관 단체	징계사실유무서 내 위반행위 확인	최대 3년 (각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름)	위반행위 이력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성비위) 포함

※ 위의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내 위반행위 기재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 이용하는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귀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